

제13장

경쟁

제1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경제부 경쟁 및 소비자보호국

다. 바레인왕국의 경우, 경쟁 촉진 및 보호 당국

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독점적 관행의 방지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

마. 오만왕국의 경우, 상공투자진흥부 경쟁 보호 및 독점 방지 센터

바. 카타르국의 경우, 상공부 경쟁보호국, 그리고

사. 쿠웨이트국의 경우, 경쟁보호국 또는 그 승계기관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나. 결프협력회의 경우, 결프협력회의 각 회원국의 경쟁에 관한 국가 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들의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나. 결프협력회의 경우, 결프협력회의 각 회원국의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 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제13.2조

목적 및 일반 원칙

- 1.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영업행위가 당사국들 간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 2.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합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인수 및 합병에 특별히 주목하는 경쟁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로 약속한다.

제13.3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입법 체계에 따라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과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그러한 법과 규정을 이에 따라 집행한다.
-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독립성을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집행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실체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각 당사국의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으로부터의 모든 배제나 면제는 투명해야 한다.

6. 각 당사국은 내부 운영 절차를 제외하고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 그리고 그러한 법과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발행 지침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불복청구를 공개한다.

가. 1) 자국의 법과 규정

2)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또는

3)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하여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그리고

나. 가호1목부터 3목까지에 언급된 어떠한 근거로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변경

8. 각 당사국은 어떠한 인이나 실체에게 자국의 경쟁법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가 부과되기 전에, 그러한 인이나 실체에게 그 당사국의 경쟁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9. 각 당사국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변경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불복청구를, 그 제재나 시정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 또는 실체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인 또는 실체가 그 제재나 시정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1. 각 당사국은 경쟁 사건의 처리에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3.4조

협력

당사국들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 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각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각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각국의 경쟁 당국을 통하여 경쟁법 집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요청에 따라, 요청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어떠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당사국들 간 논의하는 것
- 나. 요청에 따라, 이해를 증진하거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
- 다. 요청에 따라, 동일하거나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들 간 집행 조치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 라. 요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집행 활동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

제13.5조

정보의 비밀유지

1. 이 장은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공유를 그 당사국에 요구하지 않는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비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피요청 당사국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요청의 목적

나. 요청된 정보의 사용 목적, 그리고

다. 정보의 비밀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피요청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은 목적으로 그 정보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요청 당사국의 모든 법 또는 규정

3. 어떠한 당사국들 간 비밀정보의 공유 및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해당 당사국들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다.

4. 이 장에 따라 공유된 정보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공유된 경우, 그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나.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요청시에 공개한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다. 그러한 정보가 그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외교적 경로나 해당 당사국들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립된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그러한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 제공받은 정보를 법원이나 판사가 수행하는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승인하지 않은 그 밖의 당국, 실체 또는 인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요구하는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

제13.6조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당사국들은 당사국들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정책 개발과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 활동에 대하여 다자적으로 또는 양자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의 관심사안임에 동의한다. 기술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경쟁법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관련 경험과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
- 나.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자문가 및 전문가 교류
- 다. 훈련 목적의 경쟁 당국 공무원 교류
- 라. 경쟁주창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 당국 공무원의 참여, 그리고
- 마.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제13.7조

소비자 보호

- 1. 당사국들은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당사국들 간 협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 및 그러한 법의 집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2. 각 당사국은 무역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3. 각 당사국은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4. 당사국들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당사국들 각국의 법 및 규정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수행된다.

제13.8조

협의

당사국들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요청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그 요청에서, 요청 당사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해당 당사국들 간 무역 또는 투자를 포함하여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3.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1. 이 협정의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장의 의미에서 어떠한 관행이 무역에 자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쪽 당사국이 여기는 경우, 사안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